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인비전 특허법인  
대한민국 0619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6, 8층

발송일 (일/월/년) 2020년 06월 26일 (26.06.2020)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BPP2020-0188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20/003774

국제출원일 (일/월/년)  
2020년 03월 19일 (19.03.2020)

우선일 (일/월/년)  
2019년 04월 03일 (03.04.2019)

국제특허분류(IPC)  
H04N 19/117(2014.01)i, H04N 19/82(2014.01)i, H04N 19/132(2014.01)i, H04N 19/70(2014.01)i, H04N 19/184(2014.01)i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20년 06월 26일 (26.06.2020)

심사관  
김성희  
전화번호 +82-42-481-3516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b)).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15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7-10	있음
	청구항	1-6, 11-15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15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KR 10-2013-0054377 A (미디어텍 인크.) 2013.05.24

D2: SEETHAL PALURI et al., ‘AHG17: Conditional Signaling of ALF and In-Loop Reshaper Model’, JVET-N0290, Joint Video Experts Team (JVET) of ITU-T SG 16 WP 3 and ISO/IEC JTC 1/SC 29/WG 11 14th Meeting: Geneva, CH, 2019.03.12, 페이지 1-4

D3: KR 10-2013-0034614 A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3.04.05

D4: WO 2013-081935 A1 (QUALCOMM INCORPORATED) 2013.06.06

D5: US 2015-0103900 A1 (MEDIATEK SIONOPOLIS WALK) 2015.04.16

I. 신규성 및 진보성(PCT 제33조(2) 및 (3))

1. 청구항 1, 11, 15

청구항 1과 가장 근접한 D1에는 비트스트림을 통하여 전송되는 필터 계수를 포함하는 적응 루프 필터(ALF)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단락 [0015]; 및 청구항 30, 43 참조); 이미지 영역에 대한 적응 파라미터 세트(APS)를 수신하고 APS로부터 필터 파라미터의 적어도 일부분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루프내 필터의 필터 파라미터를 결정하여 루프내 필터를 이미지 영역 내의 블록에 적용하는 단계(청구항 30, 55 참조); 및 적응 루프 필터(ALF)의 필터 계수를 수신하는 단계(청구항 30, 43 참조)를 포함하고, 하나 이상의 루프내 필터는 적응 루프 필터(ALF)를 포함하며, ALF 계수가 APS에 포함되고, ALF ON/OFF 제어 정보 및 ALF\_aps\_id가 슬라이스 헤더에 시그널링되는 특징(단락 [0043]; 청구항 43 참조)을 포함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 1의 복원 샘플들 및 필터 계수를 기반으로 수정된 복원 샘플들을 생성하는 단계가 D1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있는 특징은 통상의 기술자가 D1에 개시된 REC 블록으로부터의 재구성된 비디오 데이터는 디블로킹 필터 및 적응 루프 필터를 포함하는 추가의 처리가 진행되는 점(단락 [0016]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기재란에 계속

##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청구항 11, 15는 각각 영상 인코딩 방법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저장 매체에 관한 것으로 청구항 1과 기술적 특징이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1, 11, 15는 D1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2. 청구항 2-10, 12-14

청구항 2, 12의 추가적인 특징들은 D1에 개시된 ALF\_aps\_id가 슬라이스 헤더에 시그널링되는 점(단락 [0043]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3-4, 13의 추가적인 특징들은 D1에 개시된 APS 식별자 aps\_id는 화상에서 허용된 APS의 개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점(단락 [0041]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5-6의 추가적인 특징들은 D1에 개시된 adaptive\_loop\_filter\_enabled\_flag에 의해 ALF가 인에이블되면, APS 식별자 aps\_id가 통합되어 슬라이스가 aps\_id에 의해 나타내진 바와 같이 APS에 반송된 루프내 필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점(단락 [0040]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14의 추가적인 특징은 D1에 개시된 ALF 정보는 계수에 관련된 ALF 파라미터 및 ON/OFF 제어에 관련된 ALF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점(단락 [0015]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7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들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습니다.

청구항 8-10은 청구항 7의 종속항입니다.

따라서 청구항 2-6, 12-14는 D1에 의해 진보성이 없고, 청구항 7-10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습니다.

II. 산업상 이용가능성(PCT 제33조(4))

청구항 1-15는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